

# <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> 미술여행 프로그램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 국민 대상 미술 소비문화 확산과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사업의 일환으로 <2025 미술여행 프로그램 공모>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·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공모개요

- (공모명) 2025 미술여행 프로그램 공모
- (공모기간) 2025. 2. 5.(수) ~ 3. 26.(수), 16:00까지
- (사업기간) 2025. 5. ~ 10.(6개월)
- (공모내용) 미술여행 신규 프로그램 기획·운영비 지원
- (공모방식)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
- (지원대상)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·기관
- (지원규모) 총 210백만원(30백만원x7개)

## □ 공모내용

- (세부내용)

구분	내용
지원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·기관</li> <li>※ e나라도움을 통한 민간경상보조금 직접 수령 및 예산 집행 가능 기관</li> </ul>
신청 자격 제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</li> <li>•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</li> <li>•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</li> <li>• 동 사업으로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</li> <li>•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</li> <li>• 기금모음행사(펀드레이징)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</li> <li>• 관례적인 회원전/단체전/연례전/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</li> <li>•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</li> <li>• 기획재정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2 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</li> <li>• 문화체육관광부 「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」 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 (2022.05.16.개정)</li> <li>•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</li> </ul>

	<p>단체 및 개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</li> <li>•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li>•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</li> <li>•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</li> <li>•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,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,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</li> <li>•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</li> </ul>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술여행 신규 프로그램 기획·운영비</li> </ul>
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기관별 30백만원</li> </ul>
지원 불가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</li> <li>•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: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홈페이지 구축비 등</li> <li>• 부대비용 : 간담회 및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</li> <li>•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: 교통비, 숙박비, 유류대 등</li> <li>•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</li> <li>• 기타 사항: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,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</li> </ul>
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7건 내외</li> </ul>
지원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코스기획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국 신진 및 중견 작가 전시 중심 기획·운영</li> <li>- 비엔날레 소재 지역의 경우, 비엔날레를 포함하여 구성 필수</li> <li>- 권역 내 미술관·화랑·전시공간 3곳 이상 연계, 8회 이상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1박 2일 코스 기획, 셔틀버스 운영 가능(지역 내/타지역연계)</li> </ul> </li> <li>-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요소 추가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• <b>(부대프로그램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티스트 토크, 체험 프로그램, 스탬프 투어 등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</li> </ul> </li> <li>• <b>(운영기간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5. 9월 중</li> </ul> </li> <li>• <b>(참가자 모집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5. 8. 18.(월) 일괄 오픈을 통한 공개모집</li> <li>-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에 예약 링크 연동 필수</li> </ul> </li> <li>• <b>(참가비) 무료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참가자 노쇼방지를 위한 보증금 수령 및 반환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• <b>(언론홍보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회 이상(①참여자 모집, ②현장스케치 혹은 성료) 배포 필수</li> </ul> </li> <li>• <b>(기타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무선 송수신기 사용 필수</li> </ul> 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만족도 조사)</b></li> <li>- 관람객 만족도 조사 100부 이상(조사 문항 예경 제공)</li> </ul>
<p><b>우대 사항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술을 테마로 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시 우대</li> <li>• 지자체,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구성 시 우대</li> <li>• 외국인, 아동·청소년, 장애인,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한 코스 기획·운영 시 우대</li> </ul>
<p><b>의무 사항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 2에 따른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을 충분히 숙지하고,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</li> <li>• 총 보조금(지원금) 증빙 필수</li> <li>•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, 코스 및 프로그램 수 등 사업의 규모가 변경 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·조정될 수 있음</li> <li>•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,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 단체에게 있음</li> <li>•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</li> <li>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</li> <li>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</li> <li>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</li> <li>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•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</li> <li>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</li> <li>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</li> <li>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</li> </ul> </li> <li>• 임직원 연관(직계존비속 포함)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(‘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’관련)</li> <li>* 제13조(보조금 사용 및 제한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(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)와는 거래할 수 없다. 다만,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li> <li>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.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• e나라도움 교육(온라인_이론 1회 4시간, 오프라인_실습 2회 6시간) 수료증 제출</li> <li>•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</li> <li>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•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자, 비평가, 작가사레비(아티스트피)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을 활용하여 계약 체결</li> <li>•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(‘22.2) 에 따라 작가사레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레비 구분</li> <li>• 매년 ‘시각예술실태조사 (*구)미술시장실태조사) 응답필수</li> <li>• 전시 운영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</li> <li>• 「예술인고용보험제도」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(기획자 포함)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</li> </ul>

	<p>※ 불이행시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18조(과태료)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</p> <p>* '문화예술용역'이란?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·실연·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, 고용·도급·업무위탁·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(누리장터) 이용 필수</li> <li>• 선정자 대상 사전워크숍·성과공유회 진행 시 참석 필수</li> <li>•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</li> </ul> <p>* 정산/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**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e나라도움 상 집행·정산·실적보고·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</li> <li>•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·검증</li> <li>•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</li> <li>•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, 적극 협조</li> <li>• 모든 홍보/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</li> </ul>
--	--

○ (지원항목)

목	세목	세세목	내용
인건비	일용임금	일용임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용 근로자, 단순보조 인력비</li> <li>• 주휴수당, 원천징수, 사회보험료</li> </ul>
운영비	일반수용비	전문가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가활용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강의 원고, 번역, 진행, 수어 도슨트 등 일회성 투입인력 사례비</li> </ul> </li> <li>• 원천징수</li> </ul>
		홍보마케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광고매체수수료</li> <li>• 홍보품(기념품), 리플렛, 포스터 등의 생산/인쇄비</li> </ul>
		소모품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모품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회용품, 재료비 등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</li> </ul> </li> </ul>
	임차료	대관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관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워크숍, 교육, 부대프로그램 등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 대관비</li> </ul> </li> </ul>
		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차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/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</li> </ul> </li> </ul>
일반용역비	대행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홍보대행비(홍보물 디자인 등)</li> <li>• 행사대행비(프로그램 운영 대행 등)</li> <li>• 영상제작비</li> <li>• 기타 용역비(예술경영지원센터 승인 필요)</li> </ul>	

\* 세부내용은 지원신청서상 확인 가능

## □ 공모접수

- (접수기간) 2025. 2. 5.(목) ~ 2025. 3. 26.(수)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
- (제출서류)

연번	서류명(파일형식)	방법
1	•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	e나라도움 작성 제출
2	•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(HWP) [붙임1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[붙임2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[붙임3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[붙임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붙임5]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	e나라도움 첨부 제출
3	• 사업자등록증(개인/법인)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(JPG/PDF)	

## □ 공모심의

- (심의방법) 국내 미술 관련 전문가(5인)에 의한 서류심의
- (접수방법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
- (심의기준)

연번	항목	세부내용	배점
1	프로그램 우수성	• 사업 목적·취지의 이해 및 부합성 •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차별성	30
2	계획의 충실성, 타당성, 실현 가능성	• 사업 구체성 및 현실성(일정, 예산, 내용 등) • 프로그램 운영 계획·시간의 적절성 • 홍보 및 참여자 모객 계획의 적절성	40
3	기대효과	• 미술 소비 문화 확산 효과 • 미술여행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	30
합계			100

※ 우대사항 : ① 미술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, ②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거나, ③ 사회적 취약계층(장애인, 아동·청소년, 외국인 등) 초청 프로그램 운영 시 우대

## □ 추진절차

단계	일정	세부 내용
공모 접수	~2025. 3. 26.(수) 16:00	• e나라도움 접수
서류심의	4월 1주	• 서류심의
결과발표	4월 2주	• 최종 선정기관 발표 ※ e나라도움 및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
오리엔테이션	4월	•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
지원금 교부(1차)	4월 ~ 5월	• 교부신청 접수 및 확정(1차)
지원금 교부(2차)	7월 ~ 8월	• 교부신청 접수 및 확정(2차)
사업추진	5월 ~ 10월	• 사업 수행
정산 및 실적보고	11월	•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• e나라도움 잔여 절차 마무리

\*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문의처

- (사업 관련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
  - (유선) 02-2098-2910, (이메일) koreaartweek@gokams.or.kr
  - (문의 가능 시간) 평일(월~금) 10:00~16:00 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
- (e나라도움 문의) e나라도움 고객센터
  - (유선) 1670-9595